2007. 10.

수 신 : 제천시의회의장

제 목 :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발의자 : 김봉수 의원 (서명또는~~날인~~)

외 4인

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의 안 발 의 서 명 서

의원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 고
[illegible]	[illegible]	
성 명 중	[illegible]	
강 현 삼	[illegible]	
劉永和	[illegible]	
김 명 섭	[illegible]	

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187

제안연월일 : 2007. 10. .
제 안 자 : 김봉수의원외 4인

1. 제안이유

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동법시행령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동법시행령 규정에 맞게 조정함.

(안 제1조)

○ 제1조 중 "제19조의 2"를 "제52조"로 한다.

붙임 1.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 · 구 조문 대비표 끝.

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9조의 2”를 “제5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(이하"의회"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"감사"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 . . . . 제52조 . . . .